

대구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0가단1313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이학운, 정형운, 김가해, 정지혜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준규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류강 담당변호사 강영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승현, 윤창민, 홍경원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46번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B 사이의 2019. 6. 12.자 증여계약은 166,191,026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최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191,0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0098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는 원고에게 166,191,026원 및 그 중 166,190,770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B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무변제를 전혀 못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6. 12. C으로부터 C 소유인 부산 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F에 채권최고액 2억 3,1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남편인 B가 2002. 4.경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2016. 8. 12.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B는 그 무렵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B는 별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마. H은 B의 아버지인데, H 명의의 I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I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J은행 계좌’라 한다)로 2018. 4. 20.부터 2021. 6. 24.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K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I은행,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주장

피고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B가 2016.경 위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대금을 갖고 있었거나, 이를 기반으로 재산을 형성한 후 2019.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재매수대금을 증여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여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B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19. 6. 24. F에 채권최고액 2억 3,1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12. L회사 약관대출 3,678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B가 이 사건 I은행계좌를 사용, 관리하면서 이 사건 J은행계좌로 합계 1억 2,80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B가 피고에게 증여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H이 M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도움을 준 것일 뿐이고, B로부터 증여받은 바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수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H 명의로 2018. 2. 13.경 상호 M, 업종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J은행 계좌의 메모란에 ‘H(M)’, ‘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¹⁾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N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는 B의 휴대전화 번호이고, 위 신청서의 필체는 B의 필체와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B가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당시 만 7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H이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실제 운영하였다면 그 자료는 피고가 용이하게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B가 운영했던 G는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을 하는 기업이고, M는 냉동 수산물 도소매업으로 업종이 유사한 점, 이 사건 I은행 계좌에 2018. 5. 21.부터 2021. 3. 12.까지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 출금 내역이 나타나는 점, 별지 일람표 이체 내역(대체로 매월 1,2차례씩 1,2백만 원씩 이체)에 비추어 정기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이 사건 I은행 계좌를 사용,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위 증여경위에 비추어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46번 기재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주위적 청구 : 기각예비적 청구 : 인용

판사 김범준

별지

순번	거래일	입금금액	거래내용	메모	입금계좌
1	2018. 4. 20.	4,000,000	전자금융		
2	2018. 6. 1.	4,000,000	전자금융		
3	2018. 7. 2.	4,000,000	전자금융		
4	2018. 8. 2.	2,000,000	전자금융		
5	2018. 8. 17.	2,000,000	전자금융		
6	2018. 9. 4.	2,000,000	전자금융		
7	2018. 9. 20.	2,500,000	전자금융		
8	2018. 10. 5.	2,000,000	전자금융		
9	2018. 10. 22.	2,000,000	전자금융		
10	2018. 11. 13.	2,000,000	전자금융		
11	2018. 11. 27.	2,000,000	전자금융		
12	2018. 12. 6.	2,000,000	전자금융		
13	2018. 12. 31.	1,000,000	전자금융		
14	2019. 1. 18.	2,000,000	전자금융		
15	2019. 2. 1.	2,000,000	전자금융		
16	2019. 2. 18.	1,000,000	전자금융		
17	2019. 3. 5.	1,000,000	전자금융		
18	2019. 3. 8.	500,000	전자금융		
19	2019. 3. 26.	1,000,000	전자금융		
20	2019. 4. 8.	1,000,000	전자금융		
21	2019. 4. 26.	1,000,000	전자금융		
22	2019. 5. 9.	1,000,000	전자금융		
23	2019. 5. 29.	1,000,000	전자금융		
24	2019. 6. 13.	1,000,000	전자금융		
25	2019. 6. 17.	30,000,000	전자금융		
26	2019. 6. 21.	30,000,000	전자금융		
27	2019. 6. 28.	1,000,000	전자금융		
28	2019. 7. 12.	1,000,000	전자금융		
29	2019. 8. 1.	2,000,000	전자금융		
30	2019. 9. 4.	2,000,000	전자금융		
31	2019. 10. 2.	2,000,000	전자금융		
32	2019. 11. 1.	2,000,000	전자금융		
33	2019. 12. 9.	2,000,000	전자금융		
34	2020. 1. 7.	1,000,000	전자금융		
35	2020. 3. 9.	500,000	전자금융		
36	2020. 5. 8.	1,000,000	전자금융		
37	2020. 5. 22.	500,000	전자금융		
38	2020. 6. 11.	1,000,000	전자금융		
39	2020. 9. 29.	1,000,000	전자금융		
40	2020. 11. 19.	1,000,000	전자금융		
41	2021. 1. 25.	1,000,000	전자금융		
42	2021. 2. 22.	1,000,000	전자금융		
43	2021. 3. 12.	1,000,000	전자금융		
44	2021. 4. 21.	1,000,000	전자금융		
45	2021. 5. 21.	1,000,000	전자금융		
46	2021. 6. 24.	1,000,000	전자금융		

1) 'B'로 기재된 적은 1번 있다.